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2025호

2026. 9. 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54호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5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899호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재모집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917호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 · 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92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공고
————— 26

발행 : 인천광역시서해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2]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2025호

2026. 9. 7.(월)

차 례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930호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 28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934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 30

발행 : 인천광역시서해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2]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154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연희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반시설(우수관로) 설치공사]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연희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반시설(우수관로) 설치공사(변경없음)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연희파크 주식회사(변경없음)
 - 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810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변경없음)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8차) 접수 사항을 이행
 - 당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8차) 접수 사항을 이행
 - 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9차) 접수 사항을 이행

나. 개 요

- 당초: D400 L=9.10m, D800 L=12.90m, 날개벽, FRP수문(원형)D800, 기준관 및 BOX폐쇄
 - 변경: D400 L=9.10m, D800 L=12.90m, 날개벽, FRP수문(원형)D800, 기준관 및 BOX폐쇄, 재이용수관 이설 D450, L=9.60m
4. 하천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43번지 일원(변경없음)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 2026. 4.27. ~ 2026. 6.30.
 - 변경: 2026. 4.27. ~ 2026.10.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연희동	428-168		천	310.00	15.00	15.00	공유지 (인천광역시)						
2	연희동	428-191		답	89.00	8.38	21.69	공유지 (인천광역시)						
3	연희동	428-165		제	302.00	22.23	40.19	공유지 (인천광역시)						
4	연희동	428-166		천	253.00	24.67	19.40	공유지 (인천광역시)						
5	연희동	428-243		유	20,236.00	83.6	80.37	국유지 (환경부)						
6	연희동	428-137		제	434.00	5.28	5.28	국유지 (국토교통부)						
7	연희동	428-140		제	844.00	4.84	4.84	국유지 (국토교통부)						
합 계					22,468.00	164	186.77							

7. 기타사항: 관련서류는 서해구청 하수관리과(☎032-560-0913)에 비치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15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고시내용: 총 5건(건물번호 폐지 5건)

구분	위치	도로명주소	고시일	부여(폐지)사유
폐지	가좌동 173-212	보도진로 9 (가좌동)	2026.9.7	폐지 후 새로 건물번호 부여 예정
폐지	원창동 149	원창로64번길 40-1 (원창동)	2026.9.7	멸실
폐지	원창동 144	원창로 26 (원창동)	2026.9.7	멸실
폐지	원창동 408-7	원창로 20 (원창동)	2026.9.7	멸실
폐지	석남동 655-40	북향로31번길 62 (석남동)	2026.9.7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하시거나 서해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hae.go.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899호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재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최소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9. 7. ~ 2026. 9. 21.(월) 18시 까지 (14일간)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2순위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3순위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4순위	(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검증용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내 결혼 예정인 부부,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부부
5순위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 청년창업자는 사업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1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주민등록초본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3. 신청방법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해구청 제2청사), 3층 주택과 ☎ 032-560-4593]
- 신청방법: 입주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와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비 후 직접방문(방문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또는 팩스(☎ 032-560-2770)로 신청
(※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 필요하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입주 우선순위는 신청인의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1순위 입주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순서대로

모집하되,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선정

- 입주예정자 사정상 미입주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별로 3배수 모집
 - 예비입주자 결정은 신청 임대주택별로 1순위가 우선이며,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모집
 - 예비입주자의 입주자격 유효는 금회 임대주택에 한해 공고일부터 1년간 유지됨

5. 결과발표

- 일 시: 2026. 9. 28.(월) 15:00 이후
- 방 법: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유선)하며, 미당첨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주가능(예정)일: 입주자 결정 이후 즉시(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7. 임대주택 현황

연 번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임대기간
			구 조	해당층	방 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1	인천 서해구 석남동 109-59 번지 풍성빌라 4동 403호	1	철근콘크리 트구조	4	3	31.69	300	-	3년

8.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주택소유자가 협약을 통해 3년간 (예비)신혼부부,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대학생,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무상 임대주택임
 - * 임대기간 기준은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을 말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서해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와 무관하며, 주택소유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해구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고 주택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함
- 임대차계약은 건축물소유자와 입주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

9. 기타 문의사항: 서해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 032-560-4593]

10. 입주신청서식 및 입주설명서: 서해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붙임 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입주 설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신청 임대주택 소재지: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 유형	성 명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입주예정 인원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주자격증빙서류 : 재학증명서(대 학생), 사업자증명서(청년창업자), 예술활동증명서(청년예술인),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차상위계층증명서(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정) 등
공고내용 확인
2. 공통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내용 포함)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설명서

건 물 현 황	소 재 지	인천 서해구 석남동 109-59번지 풍성빌라 4동 403호			건축 년도	1991년	
	층수 / 면적(㎡)	4층 / 31,69㎡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현황	주거형태 (단독, 다세대 등)	방	주방	화장실	기타	
		다세대주택	3	1	1		
임 대 계 획	공급인원 및 입주대상			임대료(만원)			입주예정일
	공급인원	입주자격	남녀 구분	전세	월세	보증금	
	1세대	(예비) 신혼부부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대학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없음	-	-	300만원 (삼백만원)	입주자 결정 후 즉시가능 (임대자 후 협의)
비치 품목							
참고 사항	▷ 주택설명서는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임 ▷ 해당주택은 3년간 임대조건이며,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이후 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2.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물현황 등
3. 수집 목적
 -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신청서 접수시 개인확인과 연락을 위한 자료 수집
4.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 추진시까지 (1년)
5. 고지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17호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택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6. 9. 7.(월) ~ 10. 8.(목)
2. 공람 장소: 서해구청 제2청사 3층 주택과 재개발재건축팀(서곶로299)
3. 의견서 제출방법
 - ① 직접제출: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
 - ② 이메일제출: qimhyeri3103@korea.kr (스캔본 제출)
- ※ 문의 ☎032-560-4933
4. 공람 내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5. 주요 내용

① 정비사업의 명칭

- 석남5 재개발사업

②-1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재개발 사업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서해구 석남동 575-36번지 일원	-	증) 52,558.4	52,558.4	-

②-2 정비계획 수립(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52,558.4	100.0	-
	소 계		40,639.6	77.3	-
	【택지】	공동주택용지	40,639.6	77.3	-
	소 계		11,918.8	22.7	-
	【정비기반시설】	도 로	1,624.6	3.1	무상 귀속
		주차장	2,039.2	3.9	무상 귀속
		공 원	8,255.0	15.7	무상 귀속

2.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558.4	-	52,558.4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52,558.4	감) 52,558.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2,558.4	52,558.4	100.0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	20	보조 간선 도로	4,280	44호 광장	대1-14	일반 도로	—	건고658 (68.10.23)	
변경	중로	1	56	20*	보조 간선 도로	4,280	44호 광장	대1-14	일반 도로	—		버스 정차대 확보
기정	중로	1	43	20	국지 도로	690	고속도로 1호선	중1-27	일반 도로	—	건고 (71.09.13.)	
변경	중로	1	43	20*	국지 도로	690	고속도로 1호선	중1-27	일반 도로	—		노선 확폭
기정	중로	1	44	20	국지 도로	690	고속도로 1호선	중로 1-27호선	일반 도로	—	건고 제1971-546호 (71.09.13.)	
변경	중로	1	44	20*	국지 도로	690	고속도로 1호선	중로 1-27호선	일반 도로	—		노선 확폭
폐지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260	가좌 소1-14	광2-25	일반 도로	—	건고 제1971-546호 (71.09.13.)	노선 폐지

* 가·감속차로 및 버스정차대 폭원 제외

②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6	중로 1-56	• 선형 변경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버스정차대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선형 변경 (B=20m → 20~24m)
중로 1-43	중로 1-43	• 일부 폭원 변경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일부 폭원 변경 (B=20m → 20~23.5m)
중로 1-44	중로 1-44	• 일부 폭원 변경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일부 폭원 변경 (B=20m → 20~23.5m)
소로 1-15	소로 1-15	• 도로 폐지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나.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서해구 석남동 574번지	—	증) 2,039.2	2,039.2	—	무상귀속

②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신설	• 석남동 574번지 일원 거주환경 개선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신설 (증 2,039.2㎡)

2) 공간시설

가.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 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	-	어린이 공원	서해구 석남동 574-4번지	-	증) 8,255.0	8,255.0	-	무상 귀속

②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신설	• 거주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증 8,255.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면적(㎡)	비고
경로당	3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어린이집	350	
작은도서관	200	
어린이놀이터	2,050	
주민운동시설	300	
다함께돌봄센터	100	
주민공동시설	3,000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2,558.4㎡	서해구 석남동 575-36번지 일원	209	-	-	-	209

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신설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2,558.4	획지1 (공동 주택)	40,639.6	서해구 석남동 575-36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60% 이하	250% 이하	102m 이하	지상 34층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 (공동주택)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 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도로변 및 인접대지 경계선	• 도로변 : 6m • 공원 및 주차장 : 3m					
전면공지			획지1 (공동주택)	도로변	• 도로변 : 2m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 수 : 992세대 (분양 942세대, 임대 50세대)							
			구 분		계 획					
					세대수	비율(%)				
			계		992	100.0				
			공동주택	39㎡ (임대주택)	50	5.0				
				59㎡ (일반분양)	116	11.7				
74㎡ (일반분양)	298	30.1								
		84㎡ (일반분양)	528	53.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 100.0%(992세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계획 : 5.0%(50세대)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설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중 5.0% 임대주택 계획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임대주택 전체 40㎡ 이하 규모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중 40㎡이하 규모 임대주택 5.0% 계획							
순부담률 산정 ^{주1)}			• 순부담률 = (기부채납 총면적 - 무상양여 대상 면적) / 용도지역 변경 면적 = [11,918.8㎡ - 6,658.4㎡] / 52,558.4㎡ = 5,260.4㎡ / 52,558.4㎡ = 10.01%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18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180% + 녹색건축물 3% + 지역업체참여 7% = 190% • 상한용적률^{주2)} - 허용용적률 190% +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60% = 250% • 정비계획용적률 : 250.00% 이하
----------------	---

※ 주1 :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시 순부담률 10% 이상 필요

※ 주2 : 정비구역 내 도로(1,624.6㎡), 공원(8,255.0㎡), 주차장(2,039.2㎡)를 설치·
조성 및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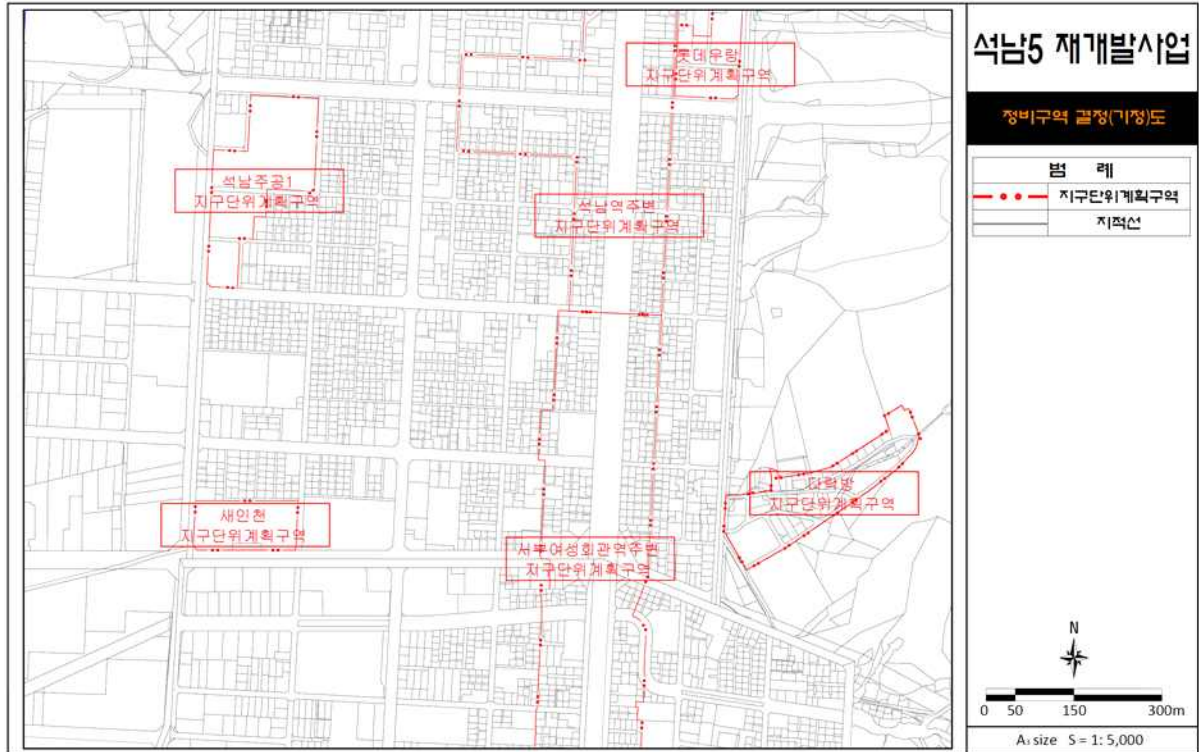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석남5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575-36 번지 일원	-	증) 52,558.4	52,558.4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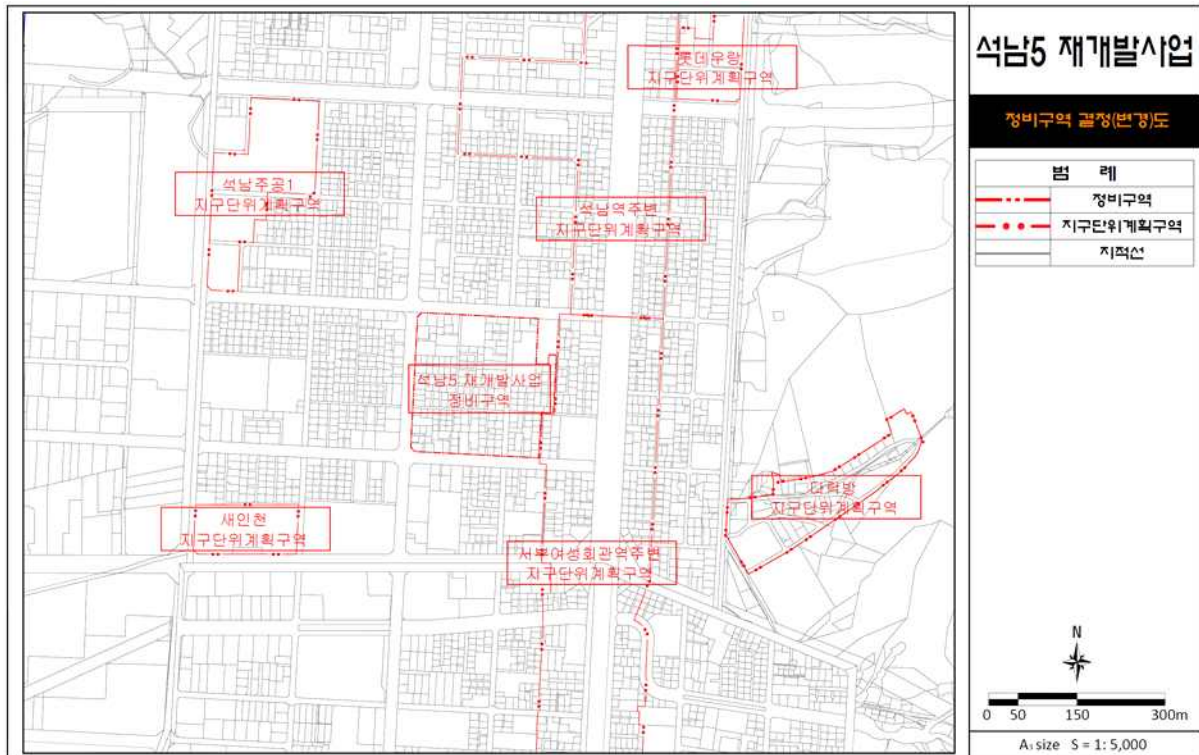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1	석남5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52,558.4㎡	•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신설

※ 정비구역 지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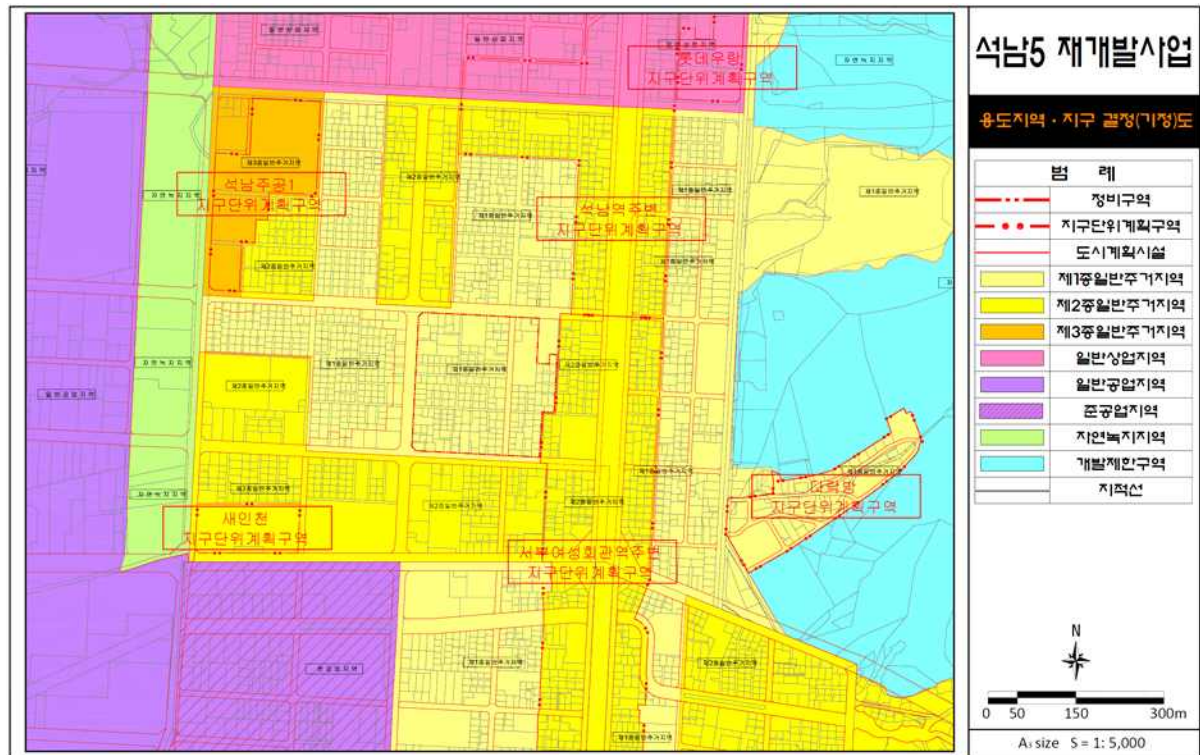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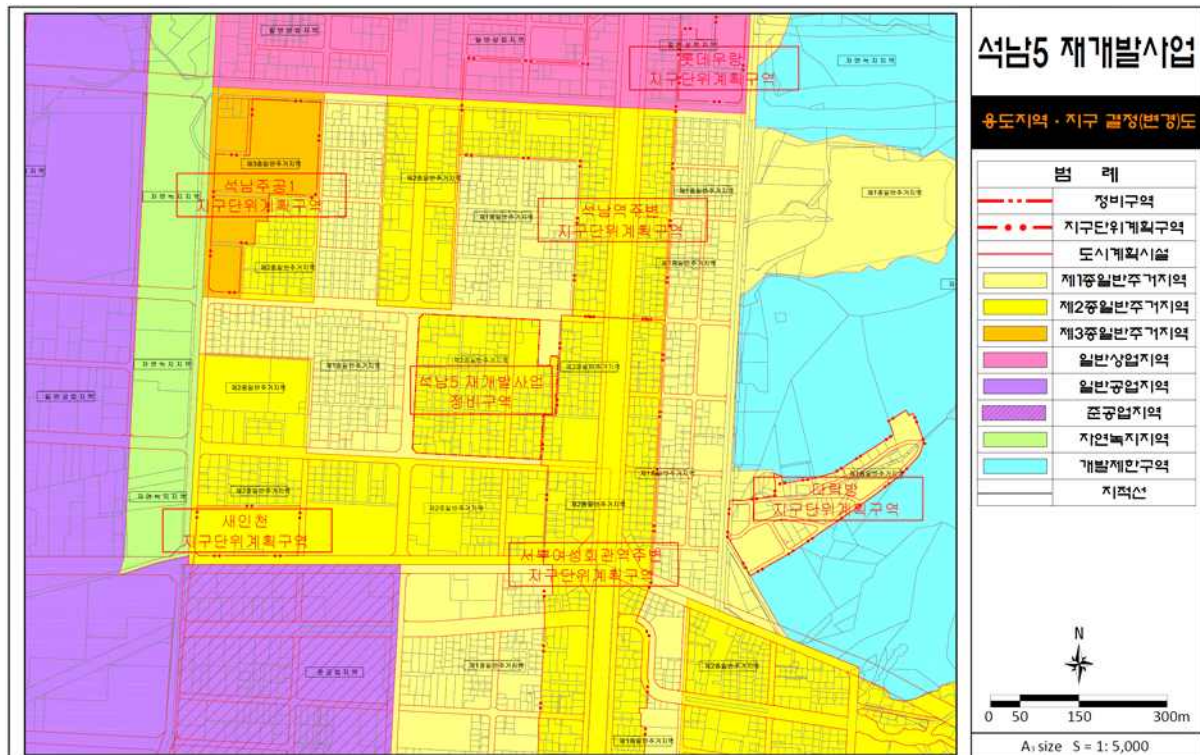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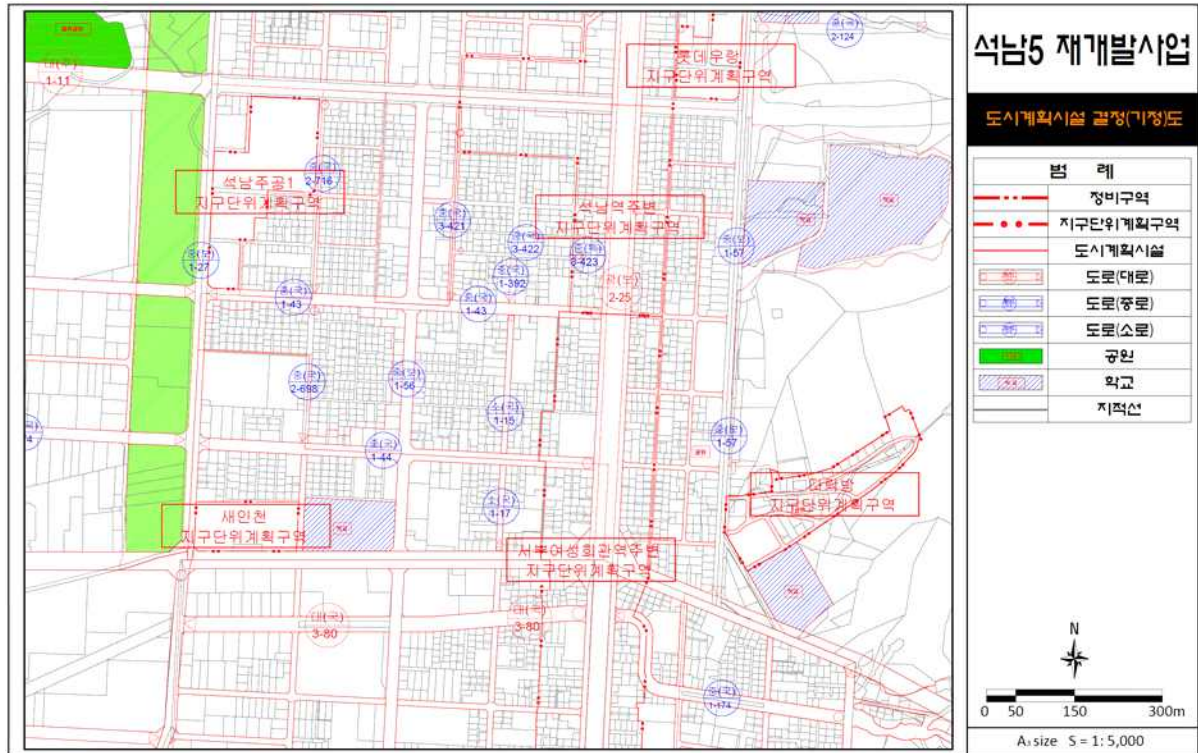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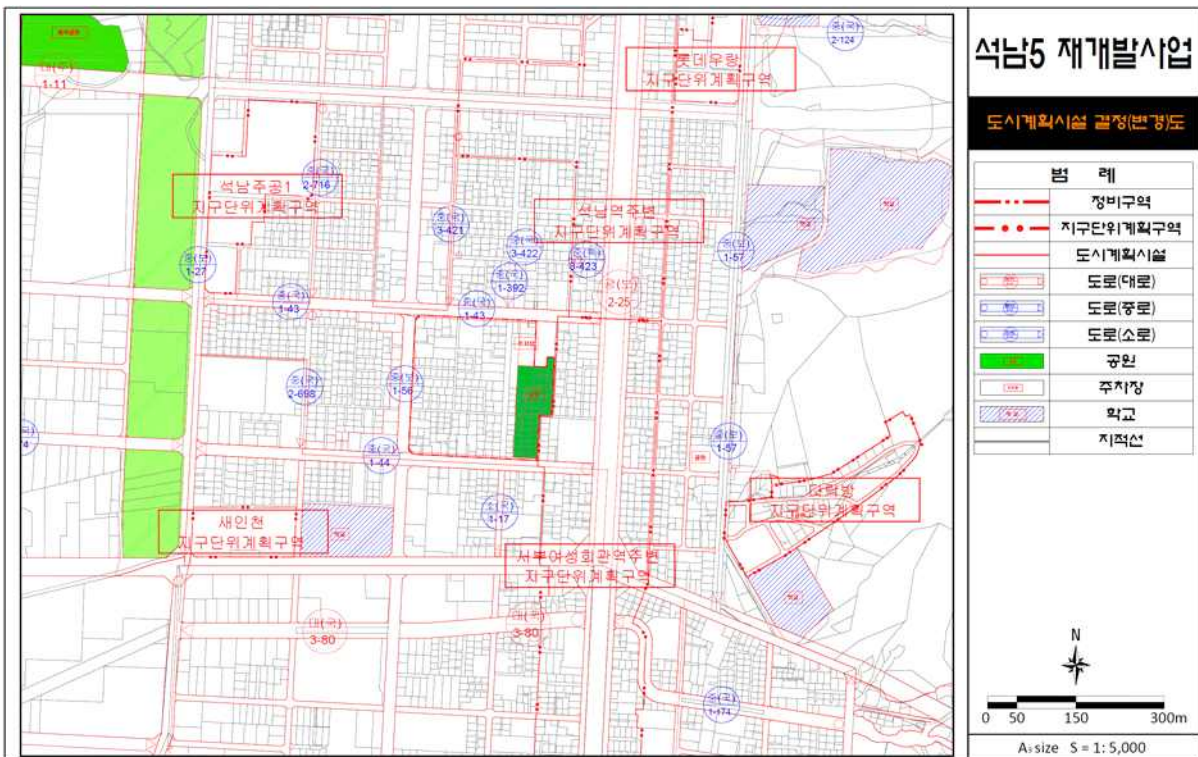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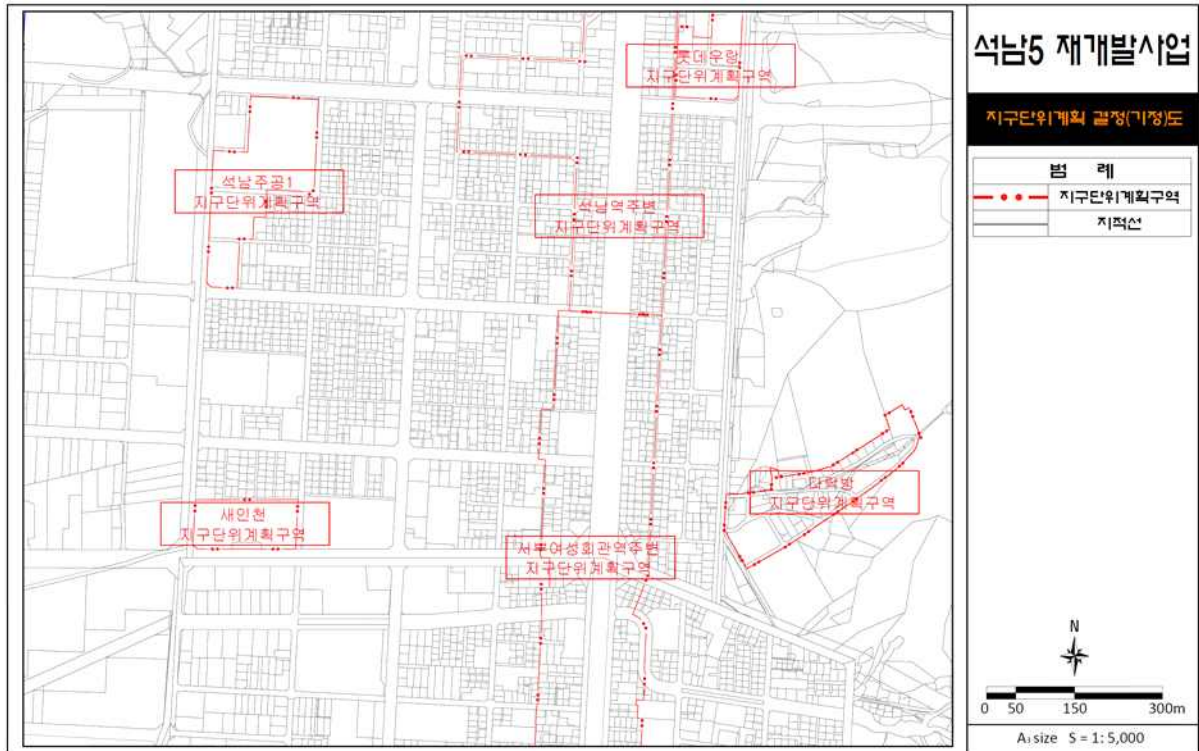


※ 토지이용 계획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기정>



<변경>



6. 관계서류: 공람장소 비치

붙임 공람·공고 주민 의견서 1부. 끝.

석남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주민 의견서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2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30.(24일간)

○ 공고내용

1. 행 정 처 분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808더9823 등 13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 행 정 지 사 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 유의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해제)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

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808더9823	봉고III 냉동차	홍*표	2026.08.28
2	301수4882	Bentayga V8	하****(주)	2026.08.28
3	375저7092	BMW 740i xDrive	비***** (주)	2026.08.26
4	257무2952	스포티지	손*현	2026.08.19
5	252누9007	G90 롱휠베이스(G90 LONG WHEEL BASE)	하****(주)	2026.08.18
6	58어5502	제네시스(GENESIS)	신*복	2026.08.14
7	59거0796	QM3	이*재(99%), 정*례(1%)	2026.08.14
8	160너8504	Mercedes-Benz S450 4MATIC	하****(주)	2026.08.14
9	177루4335	Mercedes-Benz S580 4MATIC	하****(주)	2026.08.11
10	51라8142	e-tron 50 quattro	제***** (주)	2026.08.10
11	293두3773	Rolls-Royce Ghost EWB	하****(주)	2026.08.05
12	342로5167	레인지로버 벨라 P380	케***** (주)	2026.08.04
13	127보2831	G80	김*조	2026.08.03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30호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9. 7. ~ 2026. 9. 21. (14일간)
2. 공람장소: 서해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299, 3층),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서달로123번안길 19, 2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경미한 변경)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94-2번지 외 30필지
 - (3) 구역면적: 8,052.1㎡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276명
 - (6) 사업시행자: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

(7) 변 경 내 용: 조합임원 변경, 대의원 변경

의견 제출서		
사업명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의견 제출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의견 제출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인) 서해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34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1개)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3.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지정방법 : 공개경쟁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서해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 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9. 14.(월)~ 9. 16.(수)(※근무시간9:00~18:00내 열람가능)

○ 열람장소 : 서해구청 세무1과 세무행정팀(본관 1층)

○ 열람서류 : 2023~2026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행정공개-예산/재정)에서 상시 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29.(화)

※ 단,근무시간(09:00~18:00) 외에는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기한 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제출이 불가함.**

○ 접수장소 : 서해구청 세무1과 세무행정팀(본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및 부수

① 금고지정 신청서 1부(원본 1부)

② 제안서 및 증빙서류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③ 부속서류 각 1부(원본 1부)

: 각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첨부서류(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
6. 기타사항	2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2】에 의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검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금융기관 제안서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3-다. 지방세 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서해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새로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1금고 은행과 협조하여 수납세입금 집계 및 정산 지연, 구민의 세입금 납부 불편 초래 등 관련 세입 사무 처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자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11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접수·확인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서해구청 세무1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봉합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해구청 세무1과로 문의 (☎ 032-560-4191~2)